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7. 3. 13  
도시건설위원회

## 1. 審査經緯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3월 1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- 가. 제안이유
  -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(법률 제4993호 1995.12.6)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- 나. 주요골자
  - 풍수해대책법 제30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

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전문위원 유재한)

금번 주요개정골자는 풍수해 대책법이 '95년 12월 6일(법률제 4993호)에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조례 제2조(정의)의 내용이 풍수해대책법 제30조에 의거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.

## 4. 審査結果 : 원안 의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 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2. 1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(법률 제4993호, 1995. 12. 6)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자연재해대책법(법률 제4993호, 1995. 12. 6)
- 나. 합의사항 :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라. 개정안 : 별첨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 끝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 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풍수해대책법 제30조”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철거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,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,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<u>풍수해대책법 제30조</u>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.</p> <p>제5조 ~ 제7조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.....  .....  ..... <u>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</u> .....  .....  .....본다.</p> <p>제5조 ~ 제7조 (현행과 같음)</p>